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3년 10월 8일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10월 8일

3. 제안이유

- 7.16일자로 시행된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일부개별 법령의 개정
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, 사무명, 근거법령 등을 정비하고
- 사무의 추가 위임을 통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
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시군의 계조직권 등 7건의 도지사 관장사무를 추가위임하고
- 소관부서, 사무명, 근거법령 등을 개편된 내용에 맞게 34건
조정정비하는 한편,
-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6건을 삭제하는 것임.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
기구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등의 조문정비 및 주민편익을 위한 일부 위임사무의 추가위임을 통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주요내용으로는

○ 이미 위임된 사무중 삭제되는 사무로서

-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 지원사무를 도에서 직접시행토록 하고
- 노인복지 대책에 관한 사항은 중앙 및 도에서 직접시행 토록하며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,설치자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과
-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폐기,사용중지 신고 사항은 공단위탁 처리토록하며
- 계량기 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, 영업정지 명령, 등록의 취소 사무는 그 업무를 폐지하고
-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행위자 단속사무는 수시검사로 대체 하도록 하는 내용이며

○ 위임이 추가되는 사무(도지사 사무를 시장,군수에게 권한위임)로서는

- 현정원범위내에서의 계조직권
- 대형점의 개설허가
- 액화석유가스 충전,공급,판매사업자에 대한 조정명령
- 온수보일러,온수기 및 그부대설비공사의 시공자 등록
-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채용신고 등
- 관광지 관람료 등의 징수대상 결정 및 징수
- 관광지 조성계획의 고시(도직접시행사업 제외)사무를 추가 위임하려는 내용으로서 본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줄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됨.

6. 참 부

·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중 개정조례(안)